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808호 2010. 12. 7(화)

◀ 훈 령 ▶

○포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제231호) 2

◀ 공 고 ▶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제2010-1026호) 10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제2010-1012호) 24

○포항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공고(제2010-1013) 29

○도로지정 공고(복구청 공고 제2010-262호) 34

회									
람									

훈 령

포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2월 7일

포항시 훈령 제 231호

포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를 “포항시” 로 하고, “기타” 를 “ 그 밖에” 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시” 를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하고, “기타” 를 “ 그 밖에” 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외의 자가 포항시” 를 “사람외의 사람이 시”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과장” 을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경제통상과장” 을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 을 “공무국외여행” 으로 하고, “경제통상과장” 을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 을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장” 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경제통상과장” 을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로 국외여행자는 자를 ” 를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사람들”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통상협력업무담당주사” 를 “공무국외여행담당주사” 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인 이상” 을 “10명 이상” 으로 한다.

제9조제2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다만, 국가기관,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와 정부 산하기관(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산하기관)이 실시하는 해외교육(연수)은 제외한다.

제9조제3호 중 “기타 경제통상과장” 을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장”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각호의 1과”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2인” 을 “2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경제통상과” 를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 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 를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 를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u>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과 <u>기타</u>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u>포항시</u> <u>그 밖에</u>.....</p>
<p>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 1. <u>시</u> 소속 모든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u>기타</u>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u>자외의 자가 포항시의 예산으로</u>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p>	<p>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u>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u>.....<u>그 밖에</u> 2. <u>사람외의 사람이 시</u>.....</p>
<p>② (생 략) 1. ~ 2.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p>
<p>제3조(허가권자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u>시장이</u> 허가한다.</p>	<p>제3조(허가권자 등) ①..... ..<u>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u></p>
<p>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관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20 일전까지 <u>경제통상과장</u>에게 허가신</p>	<p>② (현행과 같음) ③<u>공무국</u> <u>외여행 담당부서장</u>.....</p>

현 행	개 정
<p>청을 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관계서류</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관계서류</p>
<p>제4조(재외공관협조사항)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시 재외공관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여행출발 40일전 까지 단체여행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u>경제통상과장</u>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p>	<p>제4조(재외공관협조사항)</p> <p>.....</p> <p>..... <u>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장</u>.....</p> <p>.....</p> <p>.....</p>
<p>제5조(신청서류의 보완등) ① <u>공무국외여행</u>허가 신청서류에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u>경제통상과장</u>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p> <p>② <u>경제통상과장</u>은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p>	<p>제5조(신청서류의 보완등) ① <u>공무국외여행</u>.....</p> <p>..... <u>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장</u>.....</p> <p>.....</p> <p>② <u>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장</u>.....</p> <p>.....</p> <p>.....</p> <p>.....</p> <p>..</p>
<p>제6조(여행시간 및 시기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관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여행 계획 변경신청</p>	<p>제6조(여행시간 및 시기의 변경)</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p>3. 기타 경제통상과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를 의뢰한 경우</p> <p>제12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여행인원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이어야 하며, 동일 목적의 여행인원이 2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가 분명한지 여부</p> <p>5. ~ 8. (생략)</p> <p>② 제1항 각호의 1에 열거한 사항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p> <p>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전 경제통상과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제통상과장은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p>	<p><u>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산하기관</u>이 실시 하는 <u>해외교육(연수)</u>은 제외한다.</p> <p>3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 장.....</p> <p>제12조(심사기준) ①<u>각 호의 어느 하나와</u> 1. ~ 3. (현행과 같음) 4.<u>해당</u>.....<u>2명</u>..... 5. ~ 8. (현행과 같음) ②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제13조(소양교육) <u>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u>..... <u>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u>.....</p>

현 행	개 정
<p>교육을 면제할수 있다.</p> <p>제14조(연락유지 등) ① (생 략)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u>경제통상과</u>장과 사전 협의의 하야야 한다.</p> <p>제15조(귀국보고)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경제통상 과</u>장은 국제관련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p> <p>제14조(연락유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u>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u>.. </p> <p>제15조(귀국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u>.. </p>

1. 개정이유

포항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조직개편에 의한 포항시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의 변경으로 포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 중 국가기관,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와 정부 산하기관(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산하기관)이 실시하는 해외교육(연수)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직개편에 따른 포항시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를 변경
 - 당초 경제통상과 →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로 변경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0 - 1026호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동빈내항복원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박



2010년 12월 07일

가. 공람기간 : 2010. 12. 7 ~ 2010. 12. 27 (14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나. 공람장소

- 포항시청 동빈내항복원팀(☎054-270-3513)

- 포항시 남구청 건축지적과(☎054-270-6471)
- 포항시 북구청 건축지적과(☎054-240-7471)
- 포항시 남구 송도동 사무소(☎054-270-6441)
- 포항시 남구 해도동 사무소(☎054-281-0061)

다. 의견서 제출장소 : 포항시청 동빈내향복원팀

라. 공람내용 : 동빈내향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

1)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명 칭	위 치	면 적(m ²)	개발기간	
			기준년도	목표년도
동빈내향복원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남구 송도·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590,976	2009	2020

2)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공람도서 참조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면 적(m ²)	비 율(%)	면 적(m ²)	비 율(%)		
주 거 용 지	283,424	48.0%	276,270	46.7%	주거지역	
주 상 복 합	-	-	16,954	2.9%	준주거지역	
근 생 용 지	20,420	3.4%	-	-		
상 업 용 지	9,889	1.7%	6,123	1.0%	상업지역	
기 반 시 설	소 계	277,243	46.9%	291,629	49.4%	
	유 원 지	96,100	16.3%	96,100	16.3%	
	도로	158,908	26.9%	131,548	22.3%	
	공원/녹지	5,136	0.9%	27,485	4.7%	
	주차장	-	-	5,291	0.9%	3개소
	광 장	-	-	6,413	1.1%	
	공공, 문화, 복지시설	1,440	0.2%	9,133	1.5%	복합커뮤니티센터
	학교 / 하수도시설 (송림초/죽도중계펌프장)	15,659	2.6%	15,659	2.6%	존 치
총 계	590,976	100.0%	590,976	100.0%		

4) 인구·주택 수용계획 : 15,148인 / 6,586세대

가) 인구계획

구역명	구역 면적(m ²)	현 황		계 획	
		세대수	인구	세대	인구
계	590,976	4,400	10,438	6,586	15,148
송도1	96,764	892	2,193	1,599	3,678
송도2	59,095	603	1,522	1,119	2,574
해도1	68,901	659	1,545	1,303	2,997
해도2	151,105	1,322	2,999	2,565	5,899
유원지	96,100	924	2,179	-	-
기타(도로 등)	119,011	-	-	-	-

나) 주택계획

구역명	구역 면적(m ²)	현황세대 수 (세대)	계획세대수(세대)				
			계	40m ² 이하	40~60m ²	60~85m ²	85m ² 초과
계	590,976	4,400	6,586	732	960	3,983	911
송도1	96,764	892	1,599	169	201	975	254
송도2	59,095	603	1,119	133	282	674	30
해도1	68,901	659	1,303	131	144	782	246
해도2	151,105	1,322	2,565	299	333	1,552	381
유원지	96,100	924	-	-	-	-	-
기타(도로 등)	119,011	-	-	-	-	-	-

- 5)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공람도서 참조
- 6)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9	22,014.3	
교육시설	초등학교	1	12,881.3	송림초등학교 준치
문화·복지시설	공공청사	2	9,133.0	복합커뮤니티센터 2개소 신설

- 7)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공람도서 참조
- 8) 교통계획 : 공람도서 참조
- 9) 경관계획 : 공람도서 참조
- 10)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촉진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건축물 노후도(%)	사업방식
송도1	송도동 468-9번지 일원	96,764	68.8	주택재개발사업
송도2	송도동 503-1번지 일원	59,095	70.1	주택재개발사업
해도1	해도동 20-25번지 일원	68,901	55.1	주택재개발사업
해도2	해도동 513-1번지 일원	151,105	75.5	주택재개발사업
유원지	송도동 497-1번지 일원	96,100	-	도시계획시설사업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공람도서 참조

1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순부담면적 (순부담율)	대지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	완화	추가	상한	
송도1	96,764m ²	3,165m ² (4.0%)	78,846m ²	공동주택	25%이하	220%	13%	12%	245%	35층이하
				상업시설	70%이하	800%	48%	12%	860%	-
송도2	59,095m ²	1,859m ² (4.0%)	46,976m ²	공동주택	25%이하	220%	13%	12%	245%	35층이하
해도1	68,901m ²	2,972m ² (5.1%)	58,080m ²	공동주택	25%이하	220%	16%	12%	245%	35층이하
				주상복합	70%이하	440%	33%	12%	485%	35층이하
해도2	151,105m ²	4,594m ² (4.0%)	115,443m ²	공동주택	25%이하	220%	13%	12%	245%	35층이하

1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m ²)	계획기반 시설면적 (m ²)	기존기반시설 면적(국·공유지) (m ²)	대지면적 (m ²)	기반시설 부담률(%)	순부담율 (%)
해도1	68,901	10,821	7,849	58,080	15.7	5.1
해도2	151,105	35,662	31,068	115,443	23.6	4.0
송도1	96,764	17,918	14,753	78,846	18.5	4.0
송도2	59,095	12,119	10,260	46,976	20.5	4.0
유원지	96,100	-	-	-	-	-
기타	119,011	-	-	-	-	-
계	590,976	76,520		299,345	20.4	4.2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이주물량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시범사업	2009~2012			유원지	-
1단계	2010	2012	2014	송도1, 송도2 해도1, 해도2	1,500세대이하
2단계	2012	2014	2016		1,500세대이하
3단계	2014	2016	2018		1,500세대이하
4단계	2016	2018	2020		1,500세대이하

※ 단계별 추진계획은 촉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서 조정 가능

15)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 공람도서 참조

16)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8조 제4호)이 정하는 사항(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공람도서 참조

17)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18) 방재계획 : 공람도서 참조

19) 정보화계획 : 공람도서 참조

20) 에너지순환계획 : 공람도서 참조

21) 자족성계획 : 공람도서 참조

22) 특성화계획 : 공람도서 참조

23)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 공람도서 참조

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공람도서 참조

25)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590,976	-	590,976	100.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566,354	증) 7,864	574,218	95.8	97.2
	제1종일반주거지역	45,953	감) 45,953	-	7.8	-
	제2종일반주거지역	387,137	증) 60,832	447,969	65.5	75.8
	준 주 거 지 역	133,264	감) 7,015	126,249	22.5	21.4
일반상업지역		21,435	감) 7,864	13,571	3.7	2.3
자연녹지지역		3,187	-	3,187	0.5	0.5

나) 용도지구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5	대로 3-4호선	일반 미관지구	3호광장 ~ 송도유원지	21,010	좌900 우1,010	양측 11	1973.7.2 (경북고 제01-86호)	

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1)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15	30	주 간선	2,310.0	4호광장	대로 2-23	일반 도로		1973-07-02 (건고 제275호)	
변경	대로	2	15	30 ~3 3.5	주 간선	2,310.0	4호광장	대로 2-23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4	25	보조 간선	1,080.0	3호광장	대로 2-23	일반 도로	송도 유원지	1993-03-16 (경북고 제93-92호)	
기정	대로	3	6	25	보조 간선	2,880.0	대로 1-2	대로 2-15	일반 도로	대도초	1977-12-13 (건고 제243호)	
변경	대로	3	6	25	보조 간선	2,856.0	대로 1-2	대로 2-15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12	25	보조 간선	2,680.0	대로 2-15	대로 2-23	일반 도로	구항	1993-03-16 (경북고 제93-92호)	
기정	중로	1	5	20	보조 간선	1,600.0	대로 2-15	대로 3-4	일반 도로	대로 3-6	1993-03-16 (경북고 제93-92호)	
기정	중로	1	7-1	20	보조 간선	1,525.0	중로 1-2	유원지 1	일반 도로		1993-03-16 (경북고 제93-92호)	
기정	중로	1	7-2	20	보조 간선	610.0	대로 3-12	대로 2-15	일반 도로		1993-03-16 (경북고 제93-92호)	
기정	중로	1	31	20	보조 간선	400.0	중로1-7	대로3-4	일반 도로		1987-03-30 (경북고 제49호)	
기정	소로	2	193	8	국지 도로	63.0	유원지1	중1-5 해도485-5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06-29 (경북고 제109호)	
변경	소로	1	A	12	국지 도로	63.0	유원지1	중1-5 해도485-5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97	8	국지 도로	257.0	유원지1	중1-5 해도485-5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06-29 (경북고 제109호)	
변경	중로	2	A	15	국지 도로	257.0	유원지1	중1-5 해도485-5도	일반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200	8	국지 도로	529.9	대3-12 송도522도	대2-15 송도525도	일반 도로	9토지	1993-08-13 (포항고 제93-171호)	
변경	소로	2	200	8	국지 도로	386.9	중 2-B 송도523도	대2-15 송도525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03	8	국지 도로	400.1	대3-12 송도528도	대2-15 송도526도	일반 도로	9토지	1993-08-13 (포항고 제93-171호)	
변경	소로	2	203	8	국지 도로	292.7	중 2-B 송도527도	대2-15 송도526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04	8	국지 도로	281.8	대3-12 송도528도	대2-15 송도526도	일반 도로	9토지	1993-08-13 (포항고 제(93-171호)	
변경	소로	2	204	8	국지 도로	175.4	중 2-B 송도526도	대2-15 송도526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0	6	국지 도로	467.9	중1-7 송도527도	대2-15 송도523도	일반 도로	9토지	1993-8-13 (포항고 제93-171호)	
변경	중로	2	B	15	보조 간선	464.4	중1-7-2 송도527도	대2-15 송도523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A	10	국지 도로	144.3	대로3-4 송도474도	대로3-12 송도474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B	10	국지 도로	274.1	중 1-5 해도동 7-8대	중로1-7-1 해도동 1-69도	일반 도로			유원지와 일부중복 결정
신설	소로	2	C	10	국지 도로	745.5	대로3-6 해도519도	중로1-7-1 해도1-514전	일반 도로			유원지와 일부중복 결정
폐지	소로	2	160	8	국지 도로	58.0	유원지1	중1-5 해도523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06-29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2	167	8	국지 도로	467.7	대3-4 송도474도	소3-451 송도474도	일반 도로	5토지	1988-06-29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2	168	8	국지 도로	246.0	대3-12 송도474도	중1-31 송도474도	일반 도로	5토지	1988-06-29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2	194	8	국지 도로	186.0	유원지1	중1-5 해도483-5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06-29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2	195	8	국지 도로	387.0	대3-6 해도530도	유원지 1	일반 도로	9토지	1988-06-29 (경북고 제109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2	198	8	국지 도로	295.0	유원지1	중1-5 해도485-5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06-29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2	199	8	국지 도로	349.0	유원지1	소2-198 축도1-354대	일반 도로		1988-06-29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2	201	8	국지 도로	436.0	중1-7 송도528도	소2-205 송도528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06-29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2	205	8	국지 도로	115.5	대3-12 송도528도	소3-110 송도528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06-29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2	206	8	국지 도로	260.5	대3-6 해도516도	대2-15 해도516도	일반 도로	9토지	1993-08-13 (포항고 제93-171호)	
폐지	소로	3	104	6	국지 도로	507.0	유원지1	대3-6 해도520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106	6	국지 도로	163.2	대3-6 해도518도	소2-198 해도520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107	6	국지 도로	87.0	소2-195 해도529도	소2-2 해도529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108	6	국지 도로	118.0	소2-195 해도530도	소2-2 해도530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109	6	국지 도로	288.2	중1-5 해도485-5도	소2-2 해도530도	일반 도로	9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116	6	국지 도로	152.2	대2-15 해도516도	소2-206 해도516도	일반 도로	9토지	1993-8-13 (포항고 제93-171호)	
폐지	소로	3	117	6	국지 도로	137.5	대2-15 해도516도	소2-206 해도516도	일반 도로	9토지	1993-8-13 (포항고 제93-171호)	
폐지	소로	3	118	6	국지 도로	103.0	중1-5 해도	소2-206 해도	일반 도로	7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119	6	국지 도로	202.0	소3-118 해도	대2-15 해도	일반 도로	7토지	1993-8-13 (포항고 제93-171호)	
폐지	소로	3	120	6	국지 도로	196.0	중1-5 해도	소2-206 해도	일반 도로	7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3	423	6	국지 도로	94.0	소2-160 해도495-5도	유원지 1	일반 도로	해도동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445	6	국지 도로	120.0	대3-4 송도474도	소3-12 송도474도	일반 도로	5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446	6	국지 도로	177.0	대 3 - 4 송도 474 도	소 3 - 4 5 0 송도 474 도	일반 도로	5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447	6	국지 도로	220.5	소 3 - 4 5 0 송도 474 도	소 3 - 4 5 1 송도 474 도	일반 도로	5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448	6	국지 도로	447.9	대 3 - 4 송동 474 도	소 3 - 4 5 1 송도 474 도	일반 도로	5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449	6	국지 도로	162.0	소 3 - 4 4 5 송도 474 도	소 2 - 1 6 7 송도 474 도	일반 도로	5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450	6	국지 도로	283.0	대 3 - 1 2 송도 474 도	중 1 - 3 1 송도 474 도	일반 도로	5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폐지	소로	3	451	6	국지 도로	210.0	대 3 - 1 2 송도 474 도	중1-31 송도474도	일반 도로	5토지	1988-6-20 (경북고 제109호)	

(2) 주차장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송도동 444-10	-	증) 2,588	2,588	-	
신설	B	주차장	해도동 8-15	-	증) 1,058	1,058	-	
신설	C	주차장	송도동 516-2	-	증) 1,645	1,645	-	

(3)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8	송도1공원	어린이 공원	송도동413-16	991.0	감) 991.0	-	1987-03-30 (경북고 제49호)	
폐지	32	해도2공원	어린이 공원	해도동29-5	1,183.1	감) 1,183.1	-	1974-06-15 (경북고 제111호)	
폐지	35	해도4공원	어린이 공원	해도동30-2	2,961.5	감) 2,961.5	-	1974-06-15 (경북고 제111호)	
신설	A	동빈1공원	문화 공원	송도동 512-16	-	증) 9,596	9,596	-	유원지변
신설	B	동빈2공원	어린이 공원	송도동 475	-	증) 2,941	2,941	-	송림초교 서측

(4) 녹 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510-17	-	증) 2,180	2,180	-	
신설	B	녹지	완충녹지	해도동 514-35	-	증) 1,928	1,928	-	
신설	C	녹지	완충녹지	해도동 30-8	-	증) 8,480	8,480	-	
신설	D	녹지	연결녹지	송도동 468-4	-	증) 2,360	2,360	-	

(5) 유원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원지	죽도시장입구 - 해도동 형산강 하구	96,100	-	96,100	2009.03.17 (포항고 제2009-22호)	

(6) 광 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광장	일반광장	송도동 444-5	-	증) 3,950	3,950	-	
신설	B	광장	일반광장	송도동 484-14	-	증) 2,463	2,463	-	

(7) 시 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3	시장	소매시장	포항시 송도동440-6	1,074.0	감) 1,074.0	-	1988-06-20 (경북고 제249호)	
폐지	25	시장	소매시장	포항시 송도동493-11	1,629.8	감) 1,629.8	-	1973-12-31 (경북고 제512호)	· 송림종합 시장

(8) 하수도시설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하수도	죽도 증계펌프장	죽도 동 720	2,778	-	2,778	1993-08-13 (포항고 제93-171호)	

(9)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송도동 446-10	-	증) 4,113	4,113	-	상업지역 남측
신설	B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해도동 516-30	-	증) 5,020	5,020	-	강변로변

(10) 학 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초등 학교	송림 초등학교	송도동 471-1	27,005	감) 14,123.7	12,881.3	1978-09-07 (경북고 제252호)	

마.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다만,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기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상북도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포항시 공고 제2010 - 1012 호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와 「포항시보육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시립 어린이집” 을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2월 1일

1. 위탁운영(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전 용 적	보 육 원	종 사 자	개 원 정	비 고
장량 어린이집	북구양덕동 산118-3 (관리동)	132.9㎡	30명	5명 (시설장1, 교사3, 취사부1)	11.3월	신 규
색동 어린이집 (장애전담)	북구장성동 1567-1	557.6㎡	42명	19명 (시설장1, 교사13, 치료사4, 취사부1)	11.1월	기존시설 인수인계

☞ 보육정원 및 종사자, 개원예정은 시설설계 및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의 기준 및 내용

가. 신청 대상자 자격요건

-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포

항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단 색동어린이집시설장은 장애전담 시설장 자격증 소지자)

- ①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에 정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
- ②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정한 보육시설 보육교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개인
- ③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에 정한 법인·민간(가정)보육시설 시설장 경력이 7년 이상인 개인(단, 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시설장은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자)
- ④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⑤ 유아교육과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개설하여 운영중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법인

나. 위탁기간 : 수탁일로부터 3년

다. 위탁내용 :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라. 비용부담 : 종사자 인건비(정부지원기준 비율에 의거) 및 보육료 등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를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자격 제외대상으로 정하는 자

3. 위탁의 절차 및 방법

가.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 공고기간 : 2010. 12. 1 ~ 12. 14(14일간)

2) 신청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0. 12. 15 ~ 12. 17(3일간)

② 접수장소 : 포항시 여성가족과(보육지원담당)

③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18:00)

- 접수는 근무 시간에 한하며, 공휴일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서류(붙임 위탁관련서류 참조)

①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항 별지15호서식)

②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 정관,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보육시설 수탁결의 이사회회의록 등

③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 한함)

④ 개인의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별첨참조)

⑤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격증, 학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이력서, 보육관련 교육,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등

⑥ 향후 3년간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예산계획서(2011년~2013년간의 보육료, 인건비 등을 상세하게 명시)
- 시설운영 계획서 및 자부담 계획서
- 교사 채용계획서(해당 자격증 첨부)
- 보육 프로그램(상세하게 기술)

⑦ 보육시설 운영 실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일부항목은 운영계획서에 의하여 심사함.

⑧ 기타 선정 심의에 필요한 서류

※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등 위의 순서로 편철하여 원본1부, 사본17부를 제출하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운영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은 심사 시 해당부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지로 표시

나. 위탁 운영자 선정

- 1) 선정방법 :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2) 심사기준 :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기준에 의거 (별첨)
- 3) 심사의결 : 포항시보육정책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에 의거 채점하고 최고 득점자를 선정(단, 적격자가 없을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위탁운영자 선정 및 채점(위원별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는 집계 제외)

- 2인 이상은 선정기준에 의거 최고 득점을 받은 자를 선정
- 1인일 경우 70점이상 득점하고 위원들의 표결로 과반수 찬성을 받을 경우 선정
- 최고득점자중 동점자가 발생시 위원들의 표결로 과반수 찬성을 받은 자를 선정

4) 결과발표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5) 위·수탁계약 :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4.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기관(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포항시보육조례, 위탁계약서 등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색동어린이 집은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보육중인 아동 및 종사자를 인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운영경비 등 공금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포항시재무회계규칙,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개인이 신청한 경우 신청자가 직접 시설장으로 종사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설운영을 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음.

5. 위탁의 제한

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위탁을 제한함.

6.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로 처리 할 수 있음

다. 신청자는 심사 당일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보육시설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함.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수탁운영 시설장 예정자.

라.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 및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마.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 단체 등)는 지정된 기일까지 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수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자와 계약할 수 있음.

※ 연간 예산의 15%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바.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054-270-30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고 제2010 - 1013

포항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공고

영유아 보육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법인·단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년 12 월 1 일

1. 위탁 대상시설

- 가. 시설명 : 포항시 보육정보센터
- 나. 규 모 : 129㎡ (사무실, 교육실 등)
- 다. 종사자(예정) : 3명 정도(시설장1, 보육전문요원1, 전산지도원1)

2. 위탁의 기준 및 내용

- 가. 신청 대상자 자격요건
 -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최근 5년이내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를 처분을 받은 운영체 제외)
 - 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②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 ③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나. 위탁기간 : 3년

다. 위탁내용 : 정보센터 관리와 기능 이행을 위한 제반업무

라. 비용부담 : 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 운영자가 부담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

3. 위탁의 절차 및 방법

가.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 공고기간 : 2010. 12. 1 ~ 12. 14(14일간)

2) 신청서 접수

①접수기간 : 2010. 12. 15 ~ 12. 17(3일간)

②접수장소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③접수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3) 제출서류

①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조의서식)

②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③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1부(단체인 경우)

④ 대표자의 경력사항 1부

⑤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자격증, 학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

⑥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법인·단체 등의 조직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서류 1부

⑧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등 위의 순서로 편철하여 원본 1부, 사본17부를 제출하며 심사시 해당부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지로 표시.

나. 위탁 운영자 선정

1) 선정방법 :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선정기준표에 의거 심사

- 2) 결과발표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 3) 위·수탁계약 :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4. 위탁운영 조건

- 가. 수탁기관(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포항시보육조례, 위탁계약서 등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나. 운영경비등 공금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포항시재무회계규칙,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다. 현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센터장 제외)를 인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 중인 업무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가. 신청자는 심사 당일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정보센터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함
- 나.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 및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다. 지정된 기일까지 수탁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시 수탁자 결정을 취소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 라. 제출된 서류는 수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054-270-30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④주민등록번호			
센터개요	⑤명칭			
	⑥소재지	(전화:)		
	⑦보육정보센터장의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보육시설 중사자	센터장	명	보육전문요원	명
	전산원	명	영양사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p>「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포항시장 귀하</p>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포항시 복구청 공고 제 2010 - 262호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 복구청장

2010. 12. 3

도로지정 공고

- 1. 건명 : 도로의 지정
-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m ²)	도로길이(m)	도로너비(m) (평균값)	지정일자	비고
포항시 복구 흥해읍 이인리 283번지	283	35.0	38.0	6.0	2010.12.03	

- 3. 도면 : 복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문의처 : 건축지적과(054-240-7473)